-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19호

2021. 02. 04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0. 7. 임준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8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2. 4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임정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·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2조).

○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.

○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
○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천구에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·보급 및 확산시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천구에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·보급 및 확산시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3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함.

○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문제점

- 조례안 제정과 관련, 별 문제는 없음.

○ 종합의견

- 웰다잉이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로,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임.
- 2016년 속칭 '웰다잉법'이라고 불리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함.
- 2017년에는 호스피스 분야, 2018년에는 연명의료 분야가 단계적으로 시행됨.
-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고, 이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1개 광역/기초 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·운영 중에 있음.
-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, 양천구민들에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·보급 및 확산시키고,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로 타당한 제정 조례라고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